

직제규정

제정 1996. 4. 12.

제9차 개정 2025. 11. 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96조 및 상지대학교 직제규정 제 17조에 의하여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(이하 ‘병원’이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 및 분장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1.08.04.)

제2조(적용범위) 병원의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는 상지학원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병원장) ① 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, 석좌교수 또는 저명한 외부 인사로 보할 수 있으며, 병원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는다. (개정 2014.06.12.)(개정 2014.10.22.)
② 병원장은 병원운영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③ 병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부원장) (삭제 2008.9.27)

제6조(하부조직) 진료부, 교육연구부와 사무국을 둔다. (개정 2021.08.04.)

제7조(진료부) ① 진료부에는 진료부장을 두며 진료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(개정 2021.08.04.)
② 진료부에는 간호과, 약제과, 건강검진센터, 진료 각과, 한방요법실을 두며, 진료과장 및 건강검진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보하며 간호과장, 약제과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, 한방요법실장은 7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(개정 2017.3.2.)(개정 2021.08.04.)(개정 2022.08.23.)
③ 각 진료과에 분과나 특수클리닉을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병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설치 할 수 있다.
④ 간호과에는 중앙공급실을 둔다.
⑤ 약제과에는 탕전실, 제약실을 둔다.

제8조(교육연구부) ① 한의과대학 학생 및 수련의의 임상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임상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연구부를 두며 조직 구성원 및 운영방침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.
② 교육연구부에는 교육연구부장을 두며 교육연구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(개정 2021.08.04.)

- 제9조(사무국)**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다만, 병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초빙을 통해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1.08.04.)(개정 2022.08.23., [2025.11.26.](#))
② 사무국에는 총무과, 원무과, 대외협력과를 두고 각 과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(2012.3개정)(개정 2021.08.04.)(개정 2022.08.23.)

- 제10조(위원회)** ① 병원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각종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

- 제11조(직무대행)** ① 병원장 유고시에는 진료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기타 부서장이 유고시에는 하부조직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하부조직의 장이 유고시에는 소속 직원중 선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병원장은 업무처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제12조(계약직 교원)** 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직 교원으로 하여금 특정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- 제13조(계약직 직원)** 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직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([신설 2025.11.26.](#))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2778, 2025. 11. 26.)

이 규정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